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0. 6 선고 2021가단2206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8. 10. 18. 접수 제9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 신정민

별지